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1호
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2 일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 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(조건부(보고)완료, 2023. 4. 25.)를 거쳐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서울특별시

1. 지정목적

- 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및 한강공원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선큰 형성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로 형성
- 나. 단계적 공간구성으로 오픈스페이스 형성 및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,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 등
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
구역명	위치	범위	면적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2 일대	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	12,977.2㎡
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
구역명	주용도	대지면적	높이 (최고층수)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12,977.2㎡	120미터 (34층)

※ 세대수, 면적,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

나. 특례적용사항

구역명	특례적용사항	적용취지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「건축법」 제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: 완화 인정	-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및 통경축 계획으로 쾌적한 거주환경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- 단지 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하며, 자유로운 배치 및 형태 계획과 외부 가로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

4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

○ 관계법령에 따름

5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○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[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49호(2022. 4. 7.)],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[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 9. 21.)]에 따름

6. 기타사항

○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 02-2133-7138), 서초구 재건축사업과(☎ 02-2155-7341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■ 특별건축구역 결정도

